

「구미시 통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행정 최일선에서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통·리장에게 임무 수행에 필요한 피복을 지원하여 소속감을 고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통·리장 업무수행에 필요한 피복비 지원 근거 마련(안 제6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: 지방자치법 제28조
- 예산조치: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
- 합 의: 정책기획과, 예산재정과,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
- 기 타: 신·구조문대비표

5. 검토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

- 통·리장에게 임무수행에 필요한 피복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통·리장은 통·리를 대표하며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하며, 통·리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, 자율적 업무를 처리하고 지역주민 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 및 복지 사각지대 발굴 등 지역사회보장 사업추진을 지원하고, 기타주민의 편익증진과 봉사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으므로, 통·리장 업무수행에 필요한 피복비를 지원하는 것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.